
불법 ·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질의응답(Q&A)

2026. 7.

1. 2026. 7. 7. 시행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6. 7. 7. ~)
규제 대상 정보	불법정보만 규제	▲ 불법정보 + “허위조작정보” 규제 신설 ▲ 혐오·차별 표현을 불법정보 유형에 추가
손해배상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만 가능	▲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게재자에 대한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 신설
남소 방지	별도 규정 없음	▲ 공익 비판 위축 목적 소송의 각하 ▲ 소 각하 판결 시 공표 대상인 공인 등 규정 ▲ 소송비용 전가 특칙 신설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의무	방미심위 심의 중심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의 신고·조치 등에 관한 자율정책 수립·운영 및 보고서 공표 의무 신설
분쟁조정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5인 이하)	▲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9~20인) ▲ 조정대상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조치·이의신청 결정과 관련된 분쟁 포함
제재 수단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형사처벌 위주	▲ 반복 유포자 대상 과징금(최대 10억원) 신설 ▲ 허위 사실 명예훼손 벌칙 강화(벌금 상향, 몰수·추징)

2. Q&A로 알아보는 주요 개정 내용

정보통신망법 일반

Q.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이란?

A.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25. 12.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6. 1. 6.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6. 7. 7. 시행되었음

-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기 위한 “허위조작정보 및 사이버λεκ카 방지법” 이자,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으로,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정하여 자율정책을 수립·운영하고 보고서를 공표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했고,
- 가중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수익형 게재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토록 하였으며,
-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Q. 기존의 법으로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는지?

A. 조회 수를 노린 악성 사이버λεκ카,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임

- 기존에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에 따른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제도는 존재하였으나, 사회적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Q.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 또는 ‘입틀막법’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A.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여 수익을 얻는 악의적인 “수익형 게재자”에게 가중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규제 대상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운영 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적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음
- 아울러,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하기에 메신저 게시글 등 비공개·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이 아님

Q.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고나 검열을 피하는 법"이 공유되는 한편, 국내 플랫폼을 떠나 해외 커뮤니티나 해외 메신저로 망명하겠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A. 정부가 직접 정보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민간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으며, 카카오톡 1:1 대화 같은 사적 공간은 제외됨

- 무엇보다 이 법은 일반 국민이 아닌, 허위사실로 고의적 수익을 올리는 “악성 사이버렉카”를 타겟으로 한 것으로 건강한 공론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임

Q.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허위조작정보 여부 판단에 개입하는 것 아닌지?

A.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중립성·공정성·투명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적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누구든지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할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 신고를 받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자율운영 정책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한 후 삭제·차단, 게재자 계정 정지 등의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조치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Q.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가짜뉴스'로 지정해 삭제할 수 있는지?

A. 이번 제도는 정부가 게시물을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방식이 아님

- 정부는 게시물의 허위성 여부를 직접 판정하거나 삭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

Q. 방미심위의 심의대상에서 허위조작정보가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A. 먼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사의 자율정책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삭제·차단·계정 정지 등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실확인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또한, 게재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될 것임
-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는 여전히 불법정보로서 방미심위의 심의대상임

허위조작정보 관련

Q. 허위조작정보란?

A. ①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또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을 것 ②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③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과 같은 법익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를 말함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44조의7**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Q. 허위조작정보인지는 누가 판단하는지?

A. 신고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차단·노출 제한 등 조치 여부를 판단함

- 다만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 판단이 아니며 손해배상책임 여부는 법원이,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방미통위가 각각 별도로 판단함

Q.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정치인이 실제 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음성을 합성한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였다면 개정법상 규제 대상인지?

A. 기존에는 “불법정보”(제44조의7제1항)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개정법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새로 신설됨

- 허위조작정보란 ①허위정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또는 ②조작정보(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하여 타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정보를 의미하며,
- 위와 같이 실제 하지 않은 발언을 합성하여 유포한 영상은 허위조작정보로서, 신설된 유통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Q. AI로 만든 허위조작정보도 신고 대상인지?

A.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정보의 생성 수단(AI 여부)과 무관하며, AI로 만든 허위조작정보라 할지라도 AI 산출물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하고,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허위조작정보에 해당될 수 있음

Q. 풍자나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에서 제외되는지?

A. 풍자나 패러디는 개정 법률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음

- 다만, 풍자나 패러디로 일견 보일지라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일 경우에는 허위조작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

Q.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위조작정보에 풍자와 패러디도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보면 사실상 예외조항의 의미가 약화되는 것 아닌지?

A. 기본적으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풍자와 패러디에 해당하는지 부분은 이 법 전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일임되어 있음

- 최종적으로 결국 법원에서 판단이 되고 법원의 판단 케이스들이 쌓이면 구체적인 기준들이 정립될 수 있을 것임

Q. 특정 인물의 정책을 두고 “이 정책은 무능의 극치”라는 주관적 비판 댓글이 올라온 경우, 대상자가 이를 허위조작정보라며 신고할 수 있는지?

A. 허위조작정보는 “허위정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또는 “조작정보”(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한정되어, 검증이 가능한 사실적시가 아닌 순수한 의견·평가·논평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의견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전제로 삼은 구체적 사실관계 자체가 거짓이라면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음

Q. 게시물 내용 중에 일부만 허위인 내용이 있어도 허위정보라고 할 수 있는지?

A.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를 말하므로 일부만 허위인 정보도 허위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2. 10. 25. 선고 2011도13245) 취지를 고려하면,
-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허위 사실 부분이 전체 정보 내용 중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허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음

Q. 조작정보의 예를 든다면?

- A. ①사이버렉카 채널이 연예인에 대한 소문을 확인 없이 자극적인 제목과 편집으로 가공하여 실제와 다르게 사실로 오인되도록 영상을 제작·유포한 경우 ②실제 발언의 순서 재배치, 일부 삭제, 맥락 제거 등을 통해 원래와 다른 의미로 전달되도록 편집한 인터뷰를 유포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또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조회수 수익 등)을 얻을 목적도 함께 인정되어야 유통이 금지되는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Q. 제보를 받아 나름대로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결과적으로 틀린 정보를 게시하고, 사실이 아님을 인지한 즉시 정정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는지?

- A. 허위조작정보는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도 함께 인정되어야 하므로, 고의성·의도성·목적성이 없는 단순 오인·과실에 의한 정보 유통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음
-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정정 여부나 정정의 신속성, 사전에 사실 확인 노력의 정도 등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

혐오·차별 표현 관련

Q. 혐오·차별 표현이란?

- A. 개정 법률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음(제44조의7제1항제2의2호)

-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44조의7**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 혐오·차별 표현의 유통 금지는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 다양한 의견 표명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
- 법률이 규제하는 대상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에 한정됨

- 개별 게시물이 혐오·차별표현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경위와 맥락,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단순히 누군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정보의 한 유형인 혐오·차별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Q. 혐오·차별 표현의 예를 든다면?

- A. 특정 성별 전체를 겨냥해 극단적인 증오심을 부추기는 게시물, 특정 연령대를 겨냥해 사회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며 세대 간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게시물, 특정 국가 출신자를 겨냥해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게시물, 저소득층 밀집 지역 주민들을 소득수준을 이유로 비하하며 직접적인 차별을 선동하는 게시물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음
- 또한 법률에서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한 정도의 위법성이 요구되며, 이와 같은 정보는 불법정보의 한 유형에 해당하여 규제 대상이 됨

Q. 혐오·차별 표현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A. 온라인에서 혐오·차별 표현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해당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거나 방미심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구체적 위치(URL), 신고 내용, 혐오·차별 표현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증빙 자료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됨

- 방미심위는 심의를 거쳐 혐오·차별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표현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Q. 혐오·차별 표현인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지?

A. 1차적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아울러 방미심위는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심의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가 혐오·차별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고,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

Q. 어디까지가 혐오 표현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명확하고, '증오심 조장' 등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A.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내용 뿐만 아니라 작성 경위와 맥락,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미심위가 법률과 심의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됨

- 따라서 심의 기관의 고도의 판단 행위로 결정이 나는 시스템을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방미심위 심결례가 축적되면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그 기준도 구체화 되고 보편화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축적되면 그에 따른 기준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임

Q. 표현의 내용,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판단 기준 모호한 것 아닌지?

A. 동일한 표현이라도 사용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의미와 사회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표현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경우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표현의 내용,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자체가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봄

Q. 혐오·차별 표현으로 신고를 받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A.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받은 정보가 자율운영정책에 따른 혐오·차별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자나 게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Q. 혐오 표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개인이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A. 혐오 표현이 불법정보에 해당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수익형 게재자”에게는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함

- 또한 혐오 표현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모욕·명예훼손 등 형사적 책임도 문제될 수 있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관련

Q. 대형 플랫폼 운영사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A.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자는 자를 말함

- *①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
- ②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시청·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 시 자율정책 수립·운영, 보고서 공표 등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됨
- 다만 이용자 수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미통위는 매년 이용자 수 산정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대상 사업자를 지정하게 됨

Q.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를 최초 지정시 어떤 방법으로 이용자 수를 산정하였나?

A. 일차적으로 신뢰성 있는 리서치 보고서 통계를 참조하여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되, 해당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수 관련 소명 자료를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임

- 개정 법률 시행 후에는 방미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의 현황 자료 요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임

Q.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자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되었는지?

A. 국내 사업자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에이엑스지 5개 사업자, 해외 사업자 경우 구글·메타·엑스·틱톡 4개 사업자로 총 9개 사업자에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을 통보하였음

Q. 사업 허가를 내주는 정부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민간 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는지?

A.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부의 허가 대상이 아님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정책을 담은 약관 혹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제공자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 사항으로,
- 정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정책 내용에 대해 관여하지 않음

Q. 해외 기업인 메타나 구글도 신고 처리 의무자 대상에 포함되는데 강제성이 있나?

A.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의 경우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되고 국내 법률 준수 의무가 발생함

- 다만 방미통위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메타나 구글도 신고 처리 기능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Q. 방미통위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관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 토론회 등에서 나온 의견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인 이용자 수를 일일 평균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줄여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의 제도 보완도 고려 사항 중 하나인지?

A. 향후 법 시행 경과를 살펴보면서, 필요한 경우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제도 보완도 가능함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관련

Q.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나 사업자가 바로 삭제나 차단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A.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허위 조작정보의 신고가 가능함

-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의 내용과 신고 이유, 증빙 자료 등 필수적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면 됨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체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검토한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하며, 정부는 게시물의 허위성 여부를 직접 판정하거나 삭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

Q. 개인 간에 의사소통이 되는 메신저 게시글도 감시받고 고발될 수 있는지?

A. 카카오톡 등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간 사적 대화나 의견교환은 허위 조작정보 유통방지 대상이 아님

- 다만, 오픈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으며, 정보가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서비스는 대상이 될 수 있음

Q. 신고가 접수되면 게시물이 자동 삭제되나?

A. 신고가 접수됐다고 자동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 자율정책에 따라 검토한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함

Q.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하나?

A.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게시물 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의 내용과 신고 이유, 증빙 자료 등 필수적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면 됨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정보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후 조치한 정당한 이유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함
- 신고자나 게재자는 조치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고 방미심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음

Q. 허위조작정보로 사업자가 신고를 받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A.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사업자의 자율운영 정책 위반 여부 또는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결과 등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삭제, 차단 등의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후 조치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Q. 이용자가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신고자나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방미심위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Q.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정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자율정책의 수립·운영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Q. 이용자가 신고한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이 “문제없음”으로 처리한 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A. 신고자와 게재자는 모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또는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방미심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함
- 이용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1차 판단에 그치지 않고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이라는 2단계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

Q.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방미심위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방미심위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인 혐오·차별표현에 대한 삭제·차단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미통위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Q.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3항 제1호부터 5호까지 조치에 대해 언론사 운영 SNS 채널 게시물 역시 예외로 인정되는지?

A. 언론사가 운영하는 SNS 채널이라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예외 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Q. 대형 동영상 플랫폼이 이용자 신고를 받고 등록된 인터넷 신문사의 보도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지?

A. 개정 법률은 신고 처리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용자 신고만을 근거로 삭제·접속차단·계정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Q. 방미통위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지?

A. 방미통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 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아울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조치 및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음

Q. 피해자가 명예훼손 피해를 입어 소송을 제기하려 하나 사이버 렉카가 익명 채널을 운영하여 실명·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방법이 없는지?

A. 피해자는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최소한의 정보(성명·주소 등)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 분쟁조정부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함
- 제공받은 정보는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 제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Q. 유튜브·메타 같은 해외 플랫폼도 국내 플랫폼처럼 신고 처리 의무를 지는지?

A. 국내외를 불문하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수 있음

- * ①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
 ②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시청·열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해당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율정책 수립·운영, 보고서 공표 의무를 지게 됨

Q. 방미통위가 플랫폼의 신고 처리에 개입할 수 있나?

A. 방미통위는 개별 신고에 대한 조치 여부나 처리 기준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구체적인 자율 운영정책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음

- 다만 방미통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정책 수립·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관련

Q. 개별 플랫폼이 아닌 업계 단체 차원에서도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지?

A.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청소년유해정보나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개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 운영정책도 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수립하도록 연계되어 있음

Q. 대규모 플랫폼이 신고·조치 기준이 되는 자율적 운영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A.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함

- 정책 수립 시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Q. 이용자가 특정 게재자를 겨냥하여 근거 없는 신고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A.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반복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판단 시 근거 없는 신고의 수, 전체 신고 중 그 비율, 신고 남용 결과가 피해자·사회에 미치는 영향, 신고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고 시 해당 정보의 구체적 위치(URL), 신고 내용 및 이유, 증빙 자료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는 것이 신고 남용 판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Q.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사의 콘텐츠 관리 현황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하는지?

A.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일일 평균 이용자 수, 신고 처리 현황(유형별 신고 건수·처리 건수·조치), 이의신청 처리 건수 및 결과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함

Q. 대형 플랫폼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팩트체크 단체와 협약을 맺고 허위정보 검증 결과를 서비스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A.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중립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 기준을 충족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협약 내용은 공개해야 함

- 사실확인 단체는 검증 결과 보고서를 작성·공개하여야 하며,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고서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함

Q.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 조치나 보고서 공표 같은 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규정은 없는 상태임.

국내 사업자는 KISO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따라 자율운영을 하려는 거 같은데, 해외 사업자에 대한 방미통위 조사 감독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방미통위의 플랫폼 사업자 조사, 감독 절차는 예시로 들면 무엇이 있는지?

A. 방미통위는 법 제44조의15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조치 및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음

사실확인 단체 관련

Q. 사실확인 단체는 정부가 지정하는 것인지?

A. 정부가 특정 사실확인 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아님

- 개정법률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사실확인 단체의 지원을 받을지 여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임

Q. 정부가 지정한 팩트체크 기관이 허위정보 여부를 최종 판정하나?

A. 민간 사실확인(팩트체크) 단체가 사실관계를 검증해 결과를 제공할 수 있지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Q.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는 어떤 기구이며, 원칙강령(Code of Principles)은 어떤 내용인지?

A.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는 미국의 미디어교육 기관인 포인터 재단에 의해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팩트체킹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 세계 팩트체킹 기관을 연결하고 팩트체크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 원칙 준수에 대한 엄격한 글로벌 인증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IFCN 원칙강령의 5가지 원칙은 ①비당파성 및 공정성, ②출처의 기준과 투명성, ③재원 및 조직의 투명성, ④방법론의 기준과 투명성, ⑤공개적이고 정직한 정정 정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Q. 투명성센터를 통해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연구·교육, 국제협력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활동을 전부 다 지원을 하는데, 정부의 지원과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양립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A.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사실확인단체에서 어떤 아이টে를 선정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어떤 방식과 어떤 절차로, 어떤 기준으로 팩트 체크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음

- 방미통위는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를 것이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도 그 원칙을 천명한 바 있음

-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 사실확인 단체는 사실확인 활동의 수행에 있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정부, 정당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함
-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는 그 지원을 이유로 사실확인 대상의 선정, 검증 기준의 설정, 사실확인 결과물의 내용 또는 공표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지시·요구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됨

Q. 사실확인단체 IFCN 인증 관련, 인증을 받은 단체만이 대규모 정보통신제공자와 협약 맺을 수 있다는 건인지 아니면 인증을 받은 곳이 투명성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A.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실확인 단체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며,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 등 기준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방미통위 고시에서 IFCN의 원칙강령을 규정하였음
- IFCN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 여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며,
- IFCN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 외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IFCN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 단체는 투명성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Q. 현재 투명성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건데, 그럼 예산을 받고 난 후에야 사실확인 활동에 대한 단체 지원이 가능하니 대규모 제공자도 협약을 그때서야 체결할 수 있는 건지?

A. 현재도 IFCN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 단체가 있으며(JTBC),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IFCN 인증을 받은 업체와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투명성센터 관련

Q. '투명성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

A. 사실확인(팩트체크) 단체 활동 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허위·조작 정보 대응 체계의 기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Q. 정부가 투명성센터를 통해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에 따라 정부 지원 단체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상 정치적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있는데?

A. 정부는 투명성센터를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은 하지만 사실확인 주제선정, 절차,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음

< 참고 : 투명성센터와 사실확인 단체 역할 >

구분	투명성센터	사실확인 단체
법령 근거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주요 임무	○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 ※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되, 직접 팩트체크를 하지는 않음	○ 사실확인 단체는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허위 또는 조작여부 검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활동을 실시
주요 역할	○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 수행 -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 사실확인 활동과 관련된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	○ 사실확인 단체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 등에 관해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해야 함

분쟁조정부 관련

Q. 분쟁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조치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방미심위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② 방미심위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분쟁조정부에 의뢰할 수 있음

→ ③ 분쟁조정부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나 그 밖에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 ④ 분쟁조정부는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⑤ 분쟁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여야 함
-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부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 및 각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함
- ⑦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⑧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에 법원에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그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는 중지됨

Q. 이용자가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려 하는데,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A. 기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되었음

- 이용자는 방미심위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방미심위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분쟁조정부에 의뢰할 수 있음
- 명예훼손 등 타인 권리 침해 정보 외에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조치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까지도 분쟁조정부의 조정 대상에 포함됨

- 개정법률 시행 당시 진행 중이던 기존 명예훼손 분쟁조정 사건은 새로운 분쟁조정부가 승계함
- 분쟁조정부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Q. 이용자는 분쟁조정부에 의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A. 조정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 처리가 중지되므로, 이용자는 조정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음

가중 손해배상 청구 관련

Q. “게재자”란 무엇인지?

A. 개정법은 “게재자”를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로 정의함

- 손해배상, 신고·이의신청 등 다수의 조문에서 “게재자”라는 용어로 규율 대상을 지칭하여,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올리는 유튜버·인플루언서 개인도 법의 직접적 규율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음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 본인도 별도의 책임 주체로 규율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Q.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는?

A.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임

Q.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의 경우 과징금은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만 부과 대상이 되었는데, 가중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정보라는 걸 누가 판단하는지?

A.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됨

-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적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목적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제도의 취지가 있음

Q. 과징금 부과 대상과는 달리 2회 이상이 아니라 1번만 해도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 정보 게재자들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닌지?

A. 허위조작정보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에 대한 적용 예외 등이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 적용이 제외됨
- 개정법률은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다층적인 장치들이 같이 들어가 있음

Q. 커뮤니티에서 허위조작정보가 담긴 게시물에 동조하는 댓글을 남겼는데, 이번 개정법률에 따른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

A. 그렇지 않음. 다만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형 게재자”가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음

Q. 유튜브나 네이버에 누군가 허위조작정보를 올리면 유튜브나 네이버도 가중 손해배상 대상인지?

A. 일정 기준 이상의 수익형 게재자가 대상이므로 유튜브나 네이버는 가중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 참고 : 가중손해배상 적용 대상인 게재자의 범위 >

게재자 = (정보게재 수 and 구독자 수) 또는 (정보게재 수 and 조회 수)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수
유통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수익 창출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평가되는 10만 명 이상	유통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

Q.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A.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제3항에서는 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 침해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 사실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임

- 다만 인과관계 등 입증이 되어 최종적으로 가중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임

Q. 사이버택카 A씨는 게재한 정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에 해당되므로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란 무엇인지?

A. 가중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②「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③기타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이어야 하며, 법원이 판단함

Q. 구독자 15만 명으로 광고수익을 올리는 유튜버가 영상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

A.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중에서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됨

Q. 일반인 피해자가 사이버택카의 신상 폭로 영상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지?

A. 손해 발생 자체는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위반상태의 지속기간·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음

Q. 구독자 50만명의 사이버택카가 특정 소상공인 매장에 대한 허위 위생·감질 의혹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조회수 수익을 얻고, 해당 매장은 매출이 급감한 경우 가중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A.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중

-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가,
-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하여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됨
- 법원은 유통 방법 및 수단, 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 및 정도,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함

Q. 신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되면 언론사도 책임을 지는지?

A. 언론사도 게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배상 및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보유통 당시에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가중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되었고,
- ①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②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③기타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아울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사,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

Q.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정치인, 대기업 임원 등이 배액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A.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치인, 대기업 임원 등이 가중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여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공적 권한 혹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자를 공인등*으로 규정하고, 법원은 공인등이 제기한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각하 판결하는 경우,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였음

* ①「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장 ③「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자인 공직자 ④「인사청문회법」상 공직 후보자 ⑤「정당법」상 정당의 대표자 ⑥「언론중재법」상 언론사의 대표자 ⑦「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 아울러, 공인이 제기한 가중 손해배상의 소가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음
- 이는 공적 권한 혹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공인의 가중 손해배상 소 제기 남용을 방지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비판 정신과 감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함임

과징금 관련

Q. 허위조작정보를 인터넷에 유통하면 정부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 것인지?

A. 과징금 부과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짐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 의하여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Q. 법원으로부터 이미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라고 인정된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지?

- A.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 의하여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 또한 과징금과 별도로 가중 손해배상 책임(최대 5배)의 경우 근거 조문과 목적(행정 제재 vs. 피해자 구제)이 서로 다르므로,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음

< 참고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와 과징금 대상자 구분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인 게재자	과징금 대상인 게재자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정보게재 수 and 구독자 수) 또는 (정보게재 수 and 조회 수)	정보게재 수 and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
-(정보게재 수)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정보게재 수)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구독자 수) 수익 창출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평가되는 10만 명 이상	- 해당 없음 -
-(조회 수)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	- 해당 없음 -
- 해당 없음 -	-(판결이 확정된 정보) 법원에서 불법·허위 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

Q. 과징금 부과 의무자가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 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A. 과징금 납부의무자는 ①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고,

- 방미통위는 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원래 납부 기한으로부터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각 분할 납부 간격을 6개월 이내로 하여 최대 3회까지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